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내 유통대리점 공개모집”  
**공 개 질 의 답 변**

---

2011. 6. 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질의 번호 : 0615-01호

□ 일 자 : 2011. 6. 15. 수

□ 질 문

1. 품목별 3년간 판매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 도내 “제주삼다수” 공급 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0.33 L	0.5 L	1.5 L	2.0 L
08년	26,292	-	6,992	820	18,480
09년	30,390	-	8,083	221	22,086
10년	35,367	211	9,247	-	25,909
계	92,049	211	24,322	1,041	66,475

○ 도내 “삼다수감귤” 공급 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150ml	1.5 L
삼다수감귤 50	08년	459	20	439
	09년	600	84	516
	10년	528	99	429
	계	1,587	203	1,384
삼다수감귤 100	08년	89	57	32
	09년	82	29	53
	10년	65	29	36
	계	236	115	121

※ 위 실적은 공사→기존대리점 공급량 기준이며, 실제 대리점의 매출액은 우리공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 도내 대형마트 및 편의점 체인 공급 실적은 제외하였습니다.

□ 질의 번호 : 0615-02호

□ 일 자 : 2011. 6. 15. 수

□ 질 문

1. 모집 지역 코드 중 A-1(대형마트, 편의점 체인)의 3년간 물동량 및 제품별 매출량을 알고 싶습니다.

○ 도내 대형마트 및 편의점 체인 “제주삼다수” 공급 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0.33 L	0.5 L	1.5 L	2.0 L
08년	915	-	207	-	708
09년	5,031	-	1,271	-	3,760
10년	6,313	15	1,494	-	4,804
계	12,259	15	2,972	-	9,272

※ 2008년은 10~12월 실적입니다.

※ 위 실적은 공사→(주)농심 공급량(도외지역 공급량 제외) 기준이며, 실제 농심의 매출액은 우리공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 질의 번호 : 0616-01호

□ 일 자 : 2011. 6. 16. 목

□ 질 문

1. 2008~2010년 서귀포시지역(現 행정구역)에 공급한 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0.33 L	0.5 L	1.5 L	2.0 L
2008년	1분기	1,290	-	304	-	986
	2분기	1,973	-	558	-	1,415
	3분기	2,241	-	487	162	1,592
	4분기	1,635	-	436	112	1,087
	계	7,139	-	1,785	274	5,080
2009년	1분기	1,451	-	295	58	1,098
	2분기	2,375	-	702	103	1,570
	3분기	2,635	-	605	88	1,942
	4분기	1,776	-	443	57	1,276
	계	8,238	-	2,046	306	5,886
2010년	1분기	1,710	-	401	17	1,292
	2분기	2,437	-	698	-	1,739
	3분기	3,400	39	746	-	2,615
	4분기	1,900	14	495	-	1,391
	계	9,449	53	2,341	18	7,037

※ 위 실적은 공사→기존대리점 공급량 기준이며, 실제 대리점의 매출액은 우리공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2. 대리점에 대한 장려금, 혹은 인센티브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개발공사에서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은 단지 판매 마진을 통해서만 이익을 올려야 하는 것인지?

답변) 공사에서 대리점으로 제공되는 판매 인센티브는 없으며, 대리점이 독립적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 번호 : 0616-02호

□ 일 자 : 2011. 6. 16. 목

□ 질 문

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답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개모집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말고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 ‘법인등기부등본’은 참가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질의 번호 : 0617-01호

□ 일 자 : 2011. 6. 17. 금

□ 질 문

1. 모집지역 ‘코드A-1’에 해당하는 각 거래처별·월별 공급실적 규모 또는 목표치

답변) 위 질의사항(0615-02호)의 질문1.에 대한 답변으로 같음

2. 품목별 출고단가 및 유통단가, 소비자단가 설정 기준  
답변)

○ 제품별 우리공사 출고단가

- “제주삼다수”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0.33 L	0.5 L	1.5 L	2.0 L
원/병	120. <sup>00</sup>	159. <sup>00</sup>	260. <sup>00</sup>	327. <sup>00</sup>
원/팩	2,400. <sup>00</sup>	3,180. <sup>00</sup>	1,560. <sup>00</sup>	1,962. <sup>00</sup>
원/팔레트	280,800. <sup>00</sup>	356,160. <sup>00</sup>	187,200. <sup>00</sup>	188,352. <sup>00</sup>

- “삼다수감귤”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150ml	1.5 L
삼다수감귤 50	원/병(팩)	180. <sup>00</sup>	980. <sup>00</sup>
	원/상자	4,320. <sup>00</sup>	11,760. <sup>00</sup>
	원/팔레트	1,036,800. <sup>00</sup>	705,600. <sup>00</sup>
삼다수감귤 100	원/병(팩)	235. <sup>00</sup>	1,350. <sup>00</sup>
	원/상자	5,640. <sup>00</sup>	16,200. <sup>00</sup>
	원/팔레트	1,353,600. <sup>00</sup>	972,000. <sup>00</sup>

- 유통단가 및 소비자단가는 각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설정 기준은 없습니다.

### 3. 매월 기준 매출개런티 적용 여부

답변) 위 질의사항(0616-01호)의 질문2.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공사에서 대리점으로 제공하는 별도의 매출개런티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최대 발주수량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 4. 제품인도, 보관 관련

답변)

- 운반차량 기준 (자차 또는 용역위탁 가능 여부)  
: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 제품인도 시, 인도수량 제한 여부 (1회 기준, 최소·최대 인도수량)  
: 제품은 ‘팔레트’ 단위로 공급되며, 인도수량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보관장소의 최소 면적 및 시설 기준  
: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먹는샘물 및 음료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품1팔레트의 규격은 가로110cm×세로110cm×높이143~166.5cm임.

5. 자사가 직접 보유한 시설·장비·인력 외에 자사 대리점 및 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시설·장비·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반드시 참가업체가 직접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으로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6. 영업사원의 범주에 배송기사, 지역 내 자사 대리점 및 타사 유통업체 사업자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위 5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7. 편의점 체인의 경우, 해당 업체(보광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와의 물류 위탁계약(해당 물류센터 입고)을 전제로 유통 계획을 수립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각 대리점과 납품 업체와의 계약 관계는 양사간 협의 사항입니다. (주)농심도 해당 물류센터 입고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